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□ 위탁 현황

- o 위탁사무: 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운영
 - 「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」 근거
 - ①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
 - ②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
 - ③ 공항소음 피해예방 및 대처에 대한 교육·홍보
 - ④ 그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ㅇ 수탁기관 : (사)항공기소음

ㅇ 위탁기간: '22.1.1. ~ '24.12.31.(3년)

 O 사업예산 : 863백만원/연간
 (단위 : 백만원)

구	분	서남권 주민지원센터			
		신월동본소(총 괄)	강서분소	구로분소	금천분소
개	원	2016.11.	2020.8.	2020.8.	2020.8.
인	력	센터장 1/사무국장 1 연구원 1/상담요원 1	분소장 1/시무지원 1	분소장 1/시무지원 1	분소장 1/시무지원 1
예	산	450	138	137	138

□ 재계약 대상

ㅇ 수탁기관 : (사)항공기소음(現수탁법인)

ㅇ 위탁예정기간 : '25.1.1. ~ '25.12.31.(1년간)

□ 재계약 추진경위

o '24.7.18. : '24년 제5,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(적정)

ㅇ '24.8.19. :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 결과(적격자 인정)

□ 재계약 사유

- (사)항공기소음은 2016년부터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소통창구 운영, 소음피해 신고처리, 항공기소음 측정 및 정보제공 등 다년간 공항 소음 관련 사업을 수탁하여 피해지역 공항소음 관련 지식과 경험 등이 축적된 전문단체임.
 - ㅇ 위탁업체 재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 - 재계약 배제 사유

결 격 사 항	결 과	사 유
①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	적정	80.2 점
②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	적정	80.2 점
③ 위탁기간 중 지도 점검, 종합성과평가 감 사(회계감사 등)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정 조치하지 않은 경우	적정	결격사유 없음
④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 희롱, 성폭력, 인권침해, 사업비 횡령,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	적정	결격사유 없음
⑤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'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(환수 등) 결정을 받고 동 사안에 대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	적정	결격사유 없음

□ 향후 추진일정

o '24. 10월 : 민간위탁 비용심사(계약심사과)

o '24. 11월 :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 체결(생활환경과)